

비공식취업통계 작성방법 연구

2006년 12월

연구자 : 경제통계실 최 정수

e-mail : jschoi@nso.go.kr

主 要 內 容

-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부문과 비공식취업의 정의를 살펴보고, 비공식취업의 범주에 따라 2005년 인구센서스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비공식취업자를 산출하는 것임
-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현재 비공식취업 측정을 위한 가장 적절한 조사를 노동력조사로 판단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나, 동 조사는 비공식취업의 불규칙성과, 계절적 특성, 짧은 조사기간의 조사라는 한계를 지님
- 근로장소, 조직형태 등 비공식취업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비공식취업자수는 총고용의 15.9%인 367만명으로 나타남
- 사업자미등록개인사업체 비공식취업자중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근로장소는 야외작업 현장, 사업장, 가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근로자의 경우 여성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3배임

I . 서 론

비공식취업통계는 자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성할 수 있으며, 노동·사회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여성 활동의 측정수단 및 국민계정의 GDP 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비공식취업의 개념은 완전히 정립된 상태는 아니며, 국제노동기구(ILO), 텔리그룹(비공식부문 통계전문가 그룹)¹⁾, OECD/UNECE 등 국제기구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최근 ILO은 텔리그룹과 함께 비공식부문 취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시범편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²⁾에 ILO의 비공식취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비공식취업 추계를 위한 기초연구(최정수·박현정, 2005)를 시도하였으나, 동 연구는 비공식취업 개념에 대한 불명확함과 기초자료의 미흡으로 비공식취업자를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연구에서 미흡한 비공식취업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보완하고, 또한 비공식취업 측정을 위한 핵심항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측면을 보완하기로 한다.

연구내용을 보면, II장에서는 비공식부문과 비공식취업의 정의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제15회와 제17회 국제노동통계관 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CLS)에서 논의된 정의를 알아본다. 이와 함께 OECD의 비공식취업통계 개발현황을 양질의 노동(Decent work)과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 NoE) 측면에서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비공식취업통계 측정을 위한 측정목표와 조사유형을 검토한

1) 텔리그룹회의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며,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ILO 통계국에 보고되며 동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개최되는 ILO 노동통계 총회 보고서가 작성된다.

2) 본 연구를 위하여 2005년과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기초연구를 위한 시험조사 항목으로 근로장소 및 조직형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결과를 제공해준 통계청 고용통계팀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해외사례를 간략하게 검토한 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비공식취업통계 산출을 위한 핵심 조사항목인 근로장소(place of work)와 조직형태의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를 언급한다.

II. 비공식부문과 비공식취업 정의

종종 학계에서는 비공식부문을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공식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분류하면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Chen, 2004). 첫째는 신고전 경제학자들로 비공식경제를 노동과 자본의 분업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둘째는 농업경제학자들로 주로 전통적인 농촌의 비공식부문에만 관심을 두고 연구한다. 셋째는 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된 비공식부문 연구자들로 개발도상국의 공식대규모기업과 비공식 소규모기업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산업관계 측면에서 비공식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중심의 그룹으로 유연화 된 노동시장형태, 동일기업내의 공식과 비공식 고용 등 공식제조업에서의 생산과 노동의 변형형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그룹이다. 이상의 연구그룹들이 바라보는 비공식경제의 특징을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통적 관점의 비공식경제 전통경제로서의 비공식부문	현대적 관점의 비공식경제 경제성장 관점에서의 비공식경제
생산의 한계, 생존활동으로 경제정책에 영향이 미미	저소득층의 고용수단, 재화/서비스의 제공, GDP의 주요비중 등으로 경제 정책에 영향 미침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뚜렷한 분리 대부분 거리상인과 영세한 소규모 생산자 중심	공식과 비공식 분리가 뚜렷하지 못함 건설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임, 가정에 종사하는 하이테크 종사자 정규직의 감소 및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축적된 빈곤노동에서 기인 불법 비등록 사업체 및 조세탈피 수단	자영업자, 가정근로자 등의 합법적인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수단

통계적 관점에서 비공식부문의 측정은 GDP의 완결한 측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특히 높은 인구 증가율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공식부문이 도시지역에서 증가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은 이들 국가의 고용창출, 생산, 소득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공식부문의 고용은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국가나 임금과 연금이 생계비용을 감당하기에 너무 낮은 국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생존전략이다. 1993 국민계정(SNA)은 비공식부문을 위한 조항³⁾을 만들었다.

비공식부문 활동은 GDP에 포착되지는 않지만 생산과 분배에 있어 완전히 합법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법생산과는 다르며 세금이나 사회보장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지하생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몇몇 비공식부문 기업은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준수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등록이나 무면허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는 소득이 너무 낮거나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또는 일정한 법과 규정이 그들의 필요 및 조건과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다.

1993년 제15회 ICLS는 비공식부문의 정의, 분류 및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통계기관을 돕기 위해 비공식부문 고용통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비공식부문 정의와 비공식부문 조사의 설계, 내용, 수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국민계정이 비공식부문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많은 국가에서 그 통계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제17회 ICLS에서는 비공식취업의 정의를 제15회 ICLS의 비공식부문의 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제15회와 제17회 ICLS에서 논의된 비공식부문의 정의, 분류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동 조항은 1993.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노동통계관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 비공식부문 정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이란 용어는 1970년대 초에 처음 생겨난 이래 매우 대중화되어 오늘날에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쓰이고 있다. 비공식부문은 원래 자료 분석과 정책입안을 위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용어는 종종 기존의 전통적 통계 기초 자료가 포괄하지 않는 활동을 지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제15회 ICLS의 출발점은 비공식부문을 통계적 개념보다는 분석적, 정치적 개념으로써 이해하는 것이었다. 결의안 제5조에 의하면 비공식부문은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고용과 소득을 창출시킬 목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폭넓게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이 단위는 대체로 노동과 자본의 구분이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며 여기에서의 노사 관계는 대부분 공식적 보증을 지닌 계약적 관계보다는 대부분 임시고용, 혈연 또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제15회 ICLS는 비공식부문의 개념을 실현 가능하고 개념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통계적 개념으로 비공식부문을 설명하고자 노력했으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공식부문을 해석하는 것은 거부했다. 즉 비공식부문 범위에서 제외된 활동이 반드시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가계의 재화 비시장생산, 소규모 농업, 유급가사서비스와 현재 1993 SNA 생산범위 외에 속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무급가계 구성원이 제공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자원봉사 등을 들었다.

이상의 제15회 ICLS의 비공식부문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비공식부문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폭넓은 국가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비공식부문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망라하도록 충분히 광범위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비공식부문 정의에 있어 이러한 융통성이 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상충된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그 정의 채택에 있어 나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⁵²

한편 비공식부문은 제15회 ICLS에 의해 1993 SNA 가계부문의 하위부문으로 간주되었다. 즉 비공식부문은 가계비법인기업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된 것이다. 법인기업, 준법인기업과 반대로 가계비법인기업은 그것을 소유한 가계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적 조직체로서 구분되지 않는 생산단위이다. 가계비법인기업은 기업과 소유주간의 소득 및 자본 흐름을 식별할 수 있는 완전한 체계가 없다.

제15회 ICLS는 1993 SNA에서 서술된 가계비법인기업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공식부문의 개념에 잘 맞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용된 고정자본과 기타 자본은 기업이 아닌 소유주에게 속한다. 소유주는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생산을 위한 지출은 가계지출과 종종 구별되기 어려우며 건물이나 차량 등의 자본 설비는 기업 목적과 가계목적에 구분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제15회 ICLS에서 채택된 비공식부문 정의의 세 가지 기준은 기업의 법적 조직, 기업소유권, 기업에서 보유하는 계정형태에 관한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모두 가계비법인기업의 개념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모든 비공식부문의 기업은 가계비법인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에 모든 가계비법인기업이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가계비법인기업 내에서는 고용주기업과 자가계정 기업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1993년 국제고용지위분류(199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의 고용주 및 자가계정 노동자 정의에 따라 기업이 최소한 한 명의 고용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지(임시고용이나 가족노동자 고용과 대조하여) 여부에 따르고 있다. 자가계정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고용주 기업은 그 운영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공식적 측면이 요구되며, 따라서 비공식부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준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 두 가지 기업집단의 구분은 자료 분석과 정책입안을 위해 비공식부문 조사표본의 충화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비공식부문은 분리 가능한 비공식자가계정기업과 비공식고용주기업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비공식부문을 정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상이하지만 상호 연관된 방법이 존재한다. 첫번째 접근방법은 기업을 현행 입법 및 행정구조와 관련하여 관찰하고, 비공식부문을 이 구조의 일정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등록과 비공식개념간의 관계를 가정한다. 두번째 접근방법은 비공식부문을 생산의 특정한 형태로 보며, 기업이 조직되고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 정의한다. 두번째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공식부문이 비등록 부문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비공식부문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명확한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록에 근거한 기준이 국가간,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간, 시간에 따른 비공식부문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기업등록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 존재하는 실질적 어려움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기업 소유주들이 정보 제공을 꺼릴 수도 있고 다른 응답자들(예: 피고용자)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등록을 비공식부문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비공식부문의 한 특성으로 본다.

제15회 ICLS에서는 두 접근방법 중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는 데 대한 합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제15회 ICLS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정의는 비등록 규모와 고용규모가 비공식부문 기업을 기타 가계비법인기업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관점에서 두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비공식 자가계정기업

제15회 ICLS는 자국의 환경에 따라 모든 자가계정기업을 비공식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국가 법률의 특정형태 하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만이 비공식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공장법 및 상법, 세법과 사회보장법, 전문가집단 규제법 및 유사 법안들로서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래 면허나 기업운영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당국에서 제정된 규정은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비등록의 기준이 적절히 선택될 경우, 법적 정체성과 계정의 완비집합(complete set) 측면에서 결여된 기준이 보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15회 ICLS는 비공식자가계정기업의 정의에 있어 어떠한 규모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 속성상 모든 자가계정 기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에 대한 기준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 비공식 고용주기업

제15회 ICLS는 비공식 고용주기업이 다음 세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통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소규모 고용기업, 둘째, 비등록 기업, 셋째, 피고용자의 비등록이다. 비공식부문을 정의하는 데 있어 규모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규모가 모든 관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측정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다 쉽게 정부로부터 식별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으며 제한된 행정 자원을 가진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노동법을 집행할 때 대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노동조합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보다 쉽게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기업은 보다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등록을 비공식부문 기준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규모 자체만을 사용하는 것은 비공식부문을 정의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으며, 규모 제한의 선택이 다소 자의적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기업 피고용자의 비등록 기준은 피고용자의 사회적, 법적 보호와 관련된 비공식부문의 고용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고용주에게 피고용자를 대신하여 관련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표준적인 노동법에 따른 고용관계를 만들도록 하는 고용 및 견습 계약의 부재로 정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피고용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은 비공식부문 기업이다. 이 기준은 사회보장기관처럼 노동자들의 등록이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등록으로 이어지는 국가에서 특히 유용하다. 다른 국가

에서는 노동자의 등록이 비공식부문을 정의하는 기준보다는 고용의 질적 지표로서 더욱 유용할 것이다.

다. 비경제적 활동

비공식부문의 범위는 경제적 활동, 즉 1993 SNA 생산범위에 포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비공식부문의 고용, 생산, 소득발생이 총고용, 국내총생산, 국민소득의 일부로서 측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때 공동체에 제공되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무급가계구성원이 제공하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3 SNA에서 생산범위는 불법생산 활동과 지하생산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활동은 비공식부문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위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비공식부문 범위 내로 편입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비공식부문의 통계조사에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 비시장생산

자가최종소비나 자가고정자본형성(예: 자가 주거지 건설)만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생산에 종사하는 가계비법인기업은 유급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가계와 함께 비공식부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두 가지 고려사항에서 기초한다. 첫째, 비시장 생산에만 종사하는 단위는 경제적 목적과 행위에 있어서 비공식부문기업과 다르며, 비공식부문기업은 대체로 시장 판매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해 생계비나 부가적 소득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비시장생산은 비공식부문 기업과 합쳐서는 안 된다. 둘째, 동 단위가 판매를 위해서 재화 일부를 생산하는 경우 외에는 자가 최종사용을 위해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자가 최종사용을 위한 생산에만 종사하는 기업과 여타 기업사이의 경계는 1993 SNA의 시장생산자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후자가 산출물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시장에 판매되는 기업(또는 사업장)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2. 비공식취업의 정의

제17회 ICLS에서는 비공식부문 취업의 정의를 제15회의 비공식부문 사업체의 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일에 기초한(job-based) 비공식적 형태의 취업' 개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제17회에서는 국제적 지침으로 채택하였다. 즉 '고용계약관계가 노동법, 소득세법, 사회적 보호 및 고용관련 혜택(예: 해고통지,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및 병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계절적 직업(causal job) 또는 단기계약직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은 비공식적 취업 (informal job)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17회에서는 비공식취업통계의 정의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국가별 상황과 자료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회 정의는 브라질, 그루지아, 인도, 멕시코, 몰디브 등의 국가에 대한 시험작성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었으며, 비공식취업의 범주에는 번호 (1)~(10)이 해당된다(<표 1> 참조).

생산단위	<표 1> 비공식적 취업의 범주									
	자가계정근로자		고용주		가족근로자		취업자		조합원	
	비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부문	X	○	X	○	1	2	○	X		○
비공식부문										
사업체	3	X	4	X	5	6	7	8		X
사업체										
가계	9	X	X	X	X	10	○	X		X

자료 : ILO(2002), Decent Work and the Informal Economy

주 : 1) 공식부문사업체: 법인사업체,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 포함

2) 비공식부문사업체: 민간비법인 사업체(개인 또는 가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미등록사업체 또는 일정규모(주로 5인) 미만 사업체

3) X: 정의될 수 없는 일

4) ○: 공식취업

5) 1~10: 비공식취업

* 비공식고용(1~6, 8~10)

* 비공식부문에서의 고용(3~8)

* 비공식부문 이외의 비공식고용(1~2, 9, 10)

3. 비공식취업과 Decent work(양질의 노동)

OECD는 고용전망(2004)에서 OECD의 회원국가에서 비공식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고용의 약 5%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의 비공식취업으로 인한 세금 손실액도 전체 GDP의 4~5%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공식취업은 저임금, 세금탈루, 사회보장부담금 탈루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개혁, 관리 및 규제 of 합리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동원을 통해 이들을 공식취업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OECD는 고용전망에서 언급하고 있다.

OECD는 비공식취업의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회원국별로 GDP 등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상이하며, 선행연구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용형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더욱 다양화되고, 고용의 질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보호가 쉽지 않은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Decent work 개념과 비공식취업을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효율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Decent work 개념은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하에서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 '양질의 노동'이나 '괜찮은 노동'으로 번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cent work을 양질의 노동으로 사용한다.

Decent가 의미하는 바는 각 국가 혹은 사회마다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Decent work 말 자체에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성의 의미는 특히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전 고용 달성이라는 기치 하에 고용량에 대한 일방적 강조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강조되고 있다. 즉 고용형태가 단순한 고용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지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량과 관련된 국제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개발도상국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저교육층의 실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비공

식고용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이들에게 '실업'은 '사치'이며, 거리에 나가서 품팔이라도 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고용량과 관련된 지표에 기초한 국가의 노동정책은 속된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량의 변화를 살펴볼 때는 어떤 형태의 고용이 소멸하며 생성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창출이 고용조건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 고령층, 청년층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이러한 경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 불가결이다.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ILO에서는 현재 11개 분야의 29개 지표를 사용하여 Decent work 통계지표를 시험조사 중이다. 총 29개 지표에서 비공식취업지표는 경제사회적 맥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표2> Decent work 분야 및 세부지표
분 야 (11개)		Decent work 세부지표(29개)
1	고용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고용률, 비농업부문 임금노동 비율
2	철폐되어야 할 노동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 임금노동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동비율
3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 저임금 고용비율, 주요직종 평균수입
4	적절한 노동시간	○ 장시간 노동비율, 시간관련 과소고용비율
5	고용안전성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 임시임금 노동자 비율
6	일과 가정의 양립	○ 의무교육 연령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들의 취업률
7	고용 평등	○ 성별 직종분화, 경영행정 직종에서 여성비율
8	안전한 작업환경	○ 치명적 부상 정도, 근로감독관 비율,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율
9	사회보장	○ 공공사회보장지출(GDP대비), 현금소득보전지출(GDP대비), 현금 소득보전 수혜자비율, 연금수혜자비율(65세 이상), 연금가입자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평균연금액(중간 또는 최소수입 대비)
10	사회적 대화	○ 노조가입률, 단체임금협약 적용률, 파업과 직장폐쇄빈도
11	경제사회적 맥락	○ 비공식 취업

자료 : OECD(2004), Employment Outlook.

4. 비공식부문과 비관측 경제

제17회 ICLS에서는 비공식부문과 비관측경제에 관한 개념의 구분 및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02년 OECD/IMF/ILO에 의해 만들어진 '비관측경제 핸드북'(Handbook of non-observed economy)에서는 비공식부문을 넓은 의미의 비관측경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관측경제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관측경제는 국민계정(SNA) 작성 시 이용되는 기초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모든 생산활동으로 지하경제, 비공식부문(주로 가계의 자가생산), 불법활동 및 기초통계 미비에 따른 누락부문을 포함한다. 국민계정의 품질을 높이는 요소 중의 하나는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포괄범위의 비배제성(exhaustive coverage)은 경제행위가 광범위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은폐되기 때문에 달성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포괄범위에서 누락되는, 즉 불법, 지하, 비공식부문 등 통계체계에서 누락되는 생산행위를 비관측경제라 하며, 이런 행위들을 포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경제지표들이 과소 추정된다. 따라서 비관측경제는 체제이행국가와 신흥공업국, 많은 빈곤국가 등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체로 비관측경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UNECE, 2003).

가. '93 국민계정(SNA)의 기준에 의한 분류

- (1) 지하경제(Underground production)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기여 회피, 법적기준 적용 회피 등을 위해 생산활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한다. 지하생산은 93 SNA에서 정의하듯이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적이고 합법적이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회피,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의 이행을 피하거나, 행정적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당국에 숨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비공식경제활동(Informal activities)은 본인 또는 관련 당사자의 고용 기회와 소득을 얻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단위로 조직화 수준이 낮고 노동과 자본의 분업이 미발달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비공식부문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중요한 경제활동 부문이다. 제15회 ICLS 결의에서는 비공식부문의 정의를 요약하고 이러한 내용이 93 SNA에 반영되었다. 대부분 비공식부문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합법적이므로 불법생산과 구별된다. 그렇지만 비공식부문의 기업은 행정규제를 따르는 것을 피하거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무허가 상태로 있기를 원하여 지하생산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비법인기업을 통해 비공식부문에 접근하는데 이것은 비법인 가계기업의 특징이 93 SNA에서의 비공식부문의 개념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비법인 가계기업은 고정자본 등이 생산단위에 속하지 않고 그 소유주에 속하며 기업은 그 자체로 다른 기업과 계약하거나 부채를 지거나 할 수 없다.

(3) 불법활동(Illegal activities)은 법적으로 금지된 경제활동으로 마약생산 및 거래, 매춘, 장물 판매 및 밀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인데, 93 SNA에서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생산이 금지되거나 판매, 소유가 금지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생산행위는 합법적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생산자에 의한 생산행위인 불법생산으로 나눈다. 93 SNA에서는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는데 상호동의를 없는 불법행위는 생산이 아닌 극단적인 형태로 간주한다.

나. Eurostat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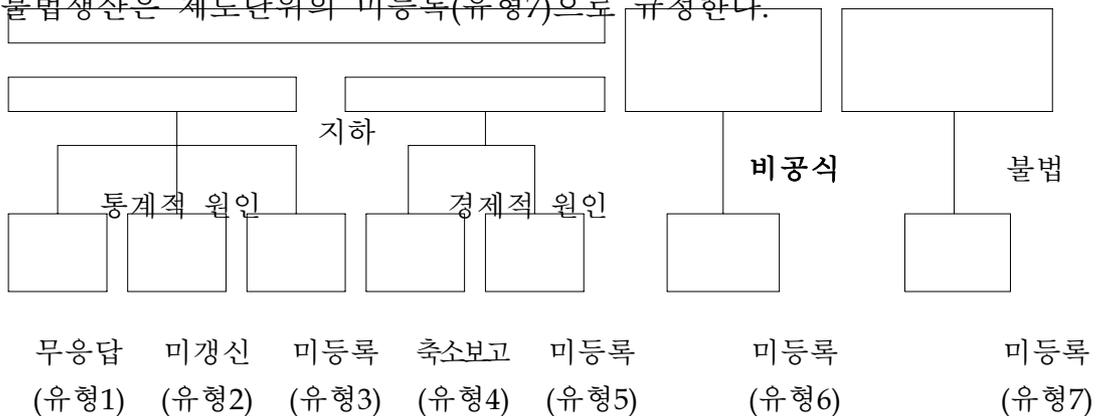
(1) 통계적 비관측(Statistical underground)에는 조사에 대한 무응답 편차(조사에 대한 무응답, 등록명부 갱신 미비, 개인기업의 높은 회전율, 통계시스템의 비효율성 등 통계적 이유)에 따른 조사단위의 누락이 해당된다.

- (2) 경제적 비관측(Economic underground)은 생산자의 의도적 축소, 은폐 (조세 회피 등을 위한 매출의 축소 및 경비의 과대 보고, 조세 규제순응 비용 등의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미등록)를 의미한다.
- (3)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은 행정법규에 의해 등록의무가 없는 조사 단위의 누락을 말한다.
- (4)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불법 활동의 은폐 또는 왜곡보고를 의미한다.

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의 분류

한편 이탈리아 통계청의 비관측경제에 대한 분석틀은 미등록과 최신자료의 부족, 무응답, 축소보고의 세 가지 유형의 통계적 문제들로 NoE 문제영역을 보고 있다. NoE 문제영역은 통계적 지하, 경제적 지하, 비공식부문, 불법생산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 세 가지 통계적 문제를 적용하여 유형을 구별하고 있다.

통계적 지하는 무응답(유형1), 최신자료의 미갱신(유형2), 제도단위의 미등록(유형3)으로 세분한다. 경제적 지하는 축소보고(유형4), 제도단위의 미등록(유형5)으로 구분하고, 비공식부문은 제도단위의 미등록(유형6)으로 구분하며, 불법생산은 제도단위의 미등록(유형7)으로 규정한다.



<그림 1> 이탈리아 통계청(Istat) 분석틀

Ⅲ. 비공식부문의 측정

1. 측정목표

비공식부문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은 측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측정목적이 단순한 고용자수와 특성, 업무조건과 관련된 비공식부문 고용의 진전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노동력조사에 몇 가지 질문들을 추가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비공식부문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계수요에 대한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에 보충적 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측정목표는 매우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관련기업의 수와 특성, 생산 활동, 고용, 소득발생, 자본적 설비, 기업이 운영되는 조건 및 제한점, 조직, 공식부문 및 공공당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비공식부문에 대한 상세한 구조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측정목표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공식부문 기업자체와 그 소유주가 관측 및 보고단위가 되는 비공식부문 전용조사를 이용하도록 권고⁴⁾하고 있다.

이상의 비공식부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사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조사와 혼합가계 기업조사이다. 이 조사는 자료여건, 통계체계의 조직,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설계는 그 범위에 속할 만한 대부분의 기업과 그들의 전형적 특성, 즉 소규모, 높은 변동성과 이직률, 기업 활동의 계절적 변동, 특정지역 내 밀집 여부, 실체 및 장소에 있어 인식 가능한 특성의 부족 여부, 사용가능한 기록 부족 여부, 참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4) OECD(2002), Measuring the Non-observed economy- A Handbook.

2. 조사유형

가. 노동력조사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의 수와 특성, 그들의 고용 및 업무 환경은 기존 노동력 조사나 유사한 가계조사에 비공식부문과 관련된 추가적 질문을 정기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추가적 질문은 고용 지위와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조사를 통해 비공식부문 고용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의 수집과 피고용자와 가족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비공식부문 고용자로부터 고용 및 업무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피고용자, 가족노동자와 대리 응답자들은 비공식부문 정의에 사용된 일부 기준, 특히 기업의 법적 조직과 장부기입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나 자가계정 노동자가 그들 기업의 특성, 즉 법적 조직, 장부기입 관행, 종사자수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비공식부문 내 총취업자수를 추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많은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비공식부문 활동이 부차적 직무로 수행되므로 비공식부문 식별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주요 직무뿐만 아니라 부차적 직무에 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피고용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비공식부문내에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모든 비공식부문 활동이 포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으로 보고되지 않을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규모 가족기업의 무급노동, 여성이 자가 계정으로 가정에서 수행하는 활동, 미신고활동, 농부, 또는 민간 공식부문 피고용자가 부차적 직무로서 수행한 비공식부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표본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많은 지역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주의¹⁶⁴를 기울여야 한다.

비공식부문 고용 측정을 위한 노동력조사나 유사 가계조사의 실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한계점은 비공식부문 고용은 총고용의 일부로 산출되며, 대체로 일주일 정도의 짧은 조사대상 기간과 관련하여 측정되어진다는 사실이다. 많은 비공식부문 활동이 시간에 따른 계절적, 또는 기타 변동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짧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얻은 비공식부문 고용에 관한 자료는 그 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간요인에 있어 대표성의 향상은 분기별, 월별 또는 지속적 조사의 경우 연내 측정을 반복하여, 연간조사나 그보다 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조사의 경우 1년과 같이 보다 긴 조사대상기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나. 가계소득지출조사

가계소득지출조사는 비공식부문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계 수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출처이다. 각 지출집단마다 구매 장소에 따라 지출배분에 대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데 슈퍼마켓, 상점, 직장 및 기타 공식적 구매 장소와 행사, 노점상, 자가 판매상(home of vendors), 소규모 비공식상점, 직장, 시장 및 기타 비공식 구매 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소득지출조사는 비공식부문 생산물의 총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총수요의 일부분인 비공식부문 생산물의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관한 자료만을 제공한다.

다. 비공식부문 기업조사

기업조사는 비공식부문기업 및 사업체의 표본 틀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업목록은 대체로 이용할 수 없다. 대규모 비공식 부문이 있는 국가는 종종 사업자명부가 없으며, 사업자명부가 존재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대체로 비공식부문 기업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공식과 비공식간의 실무적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업자명부 내 해당기업의 존재여부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업조사는 비공식부문 단위의 총 조사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¹⁶⁵

비공식부문 기업은 인식 가능한 기업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비공식부문 기업을 식별하거나 찾아내기 어렵다. 그 예는 소유주의 자택(예: 재봉업, 식품처리업)내에서, 또는 고정된 장소(예: 건설업, 운송업, 이동매매)없이 수행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한 단위들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효율적이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접근방법으로 경제 총조사를 인구 총조사를 위한 가계목록 작성 작업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다.

각 기업/사업장마다 별도로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동일한 개인이나 가계가 수행하는 비공식부문 생산 활동 간의 연계성을 발견하고, 이 자료를 가계 또는 기업 수준에서 연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가계 구성원들이 소규모 작업장이나 자택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동 가계의 다른 구성원들은 시장이나 가판대에서 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이 활동들에 대한 이중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조사는 비공식부문의 상위(upper) 부분(즉,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종종 소기업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된다.

라. 비공식부문 가계기업 혼합조사

최근 가계기업 혼합조사를 통해 비공식부문을 조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만일 조사목표가 전체와 비공식부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자료를 수집할 경우, 이와 같은 조사가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기업규모, 활동종류, 사용되는 업무장소 형태와 수행된 활동이 주요 직무인지, 부차적 직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비공식부문 기업가와 그들의 활동을 포괄한다.

가계기업 혼합조사는 지역표본에 기초하며 대체로 2단계로 수행된다. 1단계(가계조사 항목)에서는 선택된 표본지역(주요 표본단위)의 가계 목록이나 조사를 통해 비공식부문기업과 소₁₆₆기업을 위한 표본 틀을 확립한다. 그러한 결과, 조사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기업과 소유주가 식별된다. 자료는 종종

기업 소유주 자신외의 가계 구성원, 즉 대리 응답자를 통해 구해야 하므로 비공식부문 기준과 관련된 양질의 자료를 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비공식부문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의 소유주를 식별하여 비공식부문을 충분히 포괄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단계(기업조사 항목)에서는 한 명의 기업 소유주 표본(또는 모든기업 소유주)을 인터뷰하여 소유주, 기업, 피고용자(존재할 경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구한다. 비공식부문 기업은 이 단계(표본추출 후 상세조사)에서 보다 정확하게 식별될 수 있다.

가계기업 혼합조사는 동일한 개인이나 가계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부문 활동을 기업 또는 가계수준에서 공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비공식부문활동과 기업소유주의 특성에 대한 자료는 동일한 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소유주 가계의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 이것은 기타 가계구성원의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가계상황이 비공식부문 기업가로서 근무하는 여성 및 아동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마. 독립조사

독립조사는 그 표본이 비공식부문의 측정요건을 충족시키도록(예: 선택된 층위에서 명시된 신뢰도 추계치를 생산하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다 우월한 장치이다. 표본설계 시 일부 활동유형(예: 운송, 수리 및 기타서비스)은 다른 활동(예: 상업, 조리식품 판매)에 비해 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활동(예: 특정형태의 제조업)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독립적 비공식부문조사의 설계는 상당히 복잡한 조사와 표본설계, 추정절차를 수반한다.

바. 통합조사

통합조사(Integrated surveys)는 부분조사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목적, 즉 비공식부문과¹⁶⁷ 기타 주제(예; 노동력, 가계소득지출)에 대한 자료 수집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조사는 비공식부문

부분조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가계조사가 없고, 여러 개의 조사를 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폭넓은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는 유용하다.

통합조사는 모든 요건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공식부문 측정을 위한 표본 설계 요건을 추가적 목표로서 통합조사 설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표본에 포함된 비공식부문 기업을 내포한 가계 수를 증가시키고 표본 내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부문 활동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표본 할당과 추출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통합조사는 운영상 복잡하며, 특히 그 목적이 전원지역을 포함한 국가전체를 포괄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되며 표본가계의 응답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 통합조사의 예를 들면 일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도에서 수행한 1-2-3단계의 조사가 있다. 이 조사의 1단계는 노동력조사, 2단계는 노동력조사의 하위표본에 기초한 비공식부문 조사이며, 3단계는 기존의 노동인구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수행된 가계소득지출조사이다.

3. 비공식취업 조사항목

많은 국가에서는 비공식부문의 취업에 관한 원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조사, 인구센서스, 사업체조사, 가구실태조사, 생활시간활용조사 등을 통하여 비공식 취업통계를 측정하는 경험을 지니고 있다(ILO, 2002).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력조사가 비공식취업의 정의를 적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조사로 나타났다.

노동력조사로부터 비공식부문 취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별조사 항목을 보면, 사회·인구 항목(성별, 나이, 혼인 상태, 가구 구성원, 교육수준, 거주지(도시 혹은 농촌지역)) 등, 가구/가족 항목(가구/가족수, 가구/가족 유형), 근로시간 및 수입, 경제활동별(산업), 직업과 종사상 지위, 그리고 고용 형태(full-time 혹은 part-time,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permanent, temporary, seasonal, occasional 등) 등)이다. 브라질, 인디아, 멕시코,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비공식취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위의 질문에 덧붙여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연가/병가 사용 가능성 여부, 사회보장시스템의 활용, 임시직/계절노동자에 대한 서면고용계약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부록> 참조).

비공식취업과 관련된 핵심 조사항목은 근로장소 항목 및 사업체의 등록 여부를 나타내는 조직형태에 관한 항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공식취업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표를 설계한다면,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표에 위의 두 가지 항목(근로장소와 조직형태)을 추가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비공식취업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부가적 기준인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연금 수혜여부 등은 이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질문항목 중 근로장소 항목은 공식적인 일과 비공식적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 항목이다. 근로장소 항목에서는 가정, 고용주의 부동산 및 거리, 건설현장 등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1998년에 UN은 근로장소를 경제적 변수 항목으로 인구센서스 혹은 노동력 조사에 삽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국가 및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장소 항목을 인구센서스 및 노동력조사, 가구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UN의 권고내용을 보면 근로장소의 범주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1) 집(home-based workers): 가정 또는 가정 내 사무실 근로자 및 상점 점원, 자영 농부 등
- (2) 고정된 장소 없음(workers without fixed location for work): 도부상, 여행하는 영업사원, 장거리 트럭 운전자 등
- (3) 집 이외에 고정된 장소(workers with a fixed location for work outside home): 업무 시작을 고정된 장소에서 시작하는 사람(버스운전자, 비행기 조종사 등), 정기적으로 일하는 장소로 여행하는 사람(건설현장 등)

IV. 국내·외 비공식취업통계 작성

1. 해외국가 사례

인도 통계청의 Sastry(2004)는 55차 EUS(Employment Unemployment Survey 1990~2000)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6회 델리그룹에서 ILO측이 제안한 행렬방식을 적용하여 비공식 취업에 대한 추계⁵⁾를 시도하였다. 추계 결과, ILO의 비공식부문에 관한 개념적 틀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동 조사에 사업체의 형태, 모회사 및 자회사에서의 근로여부 등 조직형태에 대한 항목을 적용한 점이 비공식 취업통계를 산출하는 데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인도의 비공식취업의 60% 이상은 농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비공식형태의 산업이 주된 산업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고용형태도 공식보다는 비공식이 인도경제의 주된 고용형태를 이루고 있다.

<표 3> 성별·지역별 비공식취업 추계(2001. 1월 기준)

구분	전국						농촌			도시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노동력	379.0	273.0	123.0	300.9	196.0	104.0	96.0	77.1	18.9			
공식적 취업	32.0	26.5	5.5	11.7	9.6	2.1	20.3	16.8	3.5			
비공식적 취업	364.9 (96.3)	117.0 (95.1)	364.9 (96.3)	289.2 (96.1)	187.0 (95.4)	102.0 (98.1)	75.7 (78.9)	60.2 (78.1)	15.5 (82.0)			
○ 농업	233.9	142.0	91.3	225.8	137.0	88.0	8.1	4.8	3.3			
○ 제조업	38.5	26.7	11.7	20.9	13.3	7.6	17.5	13.3	4.1			
○ 건설업	17.2	15.2	2.0	9.9	8.7	1.1	7.4	6.5	90.0			
○ 무역업	35.8	31.4	4.4	13.5	11.9	1.7	22.2	19.5	2.7			
○ 개인가사사용	1.9	68.0	1.1	29.0	11.0	18.0	1.5	57.0	98.0			

(단위) 백만명

Sastry는 비공식부문의 정의를 ① 가구 소유의 미등록 비법인사업체, ② 회계분리가 불가능한 사업체, ③ 자가소비만을 위한 상품생산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비공식 취업은 ① 비공식부문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자가소비를 위한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로 규정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비공식취업 연구결과(Rahm & Mohammad, 2004)를 살펴보면, 이들은 비공식부문의 측정범주를 ①비공식사업체의 등록여부, ②취업인수가 적은 사업체, ③사업체에서 고용인의 등록여부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2002년에 실시된 사업체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등록사업체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를 비공식 부문사업체로 간주할 경우, 비공식부문 사업체수는 약 82천 사업체로 전체 사업체의 약 35%, 전체 판매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공식취업자는 총고용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공식부문과 비공식취업의 정의, 포괄범위 등이 실제 조사에서 정확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말레이시아의 전체 경제규모 중 비공식 부문 비중에 대한 공식적인 추계는 향후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노동력 조사에 조사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Charmes(2004)는 몇몇 국가의 비공식부문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노동력조사가 비공식부문 추계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된 조사로 나타났다. 국가별 비공식부문 취업(농업 제외)이 총 취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도의 경우 49.9%, 터키 12.9%, 그리고 멕시코 28.6%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	인도	터키	멕시코
조사자료	노동력조사 & 사업체조사	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 & 사업체조사
기준년도	1999~2000	2003	2000
비중(%)	49.9	12.9	28.6

2. 한국의 비공식취업통계 작성

한국에서 비공식취업에 대한 관심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승, 거리 및 야외 작업현장 노동자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가정근로자의 증가 등에서 높아지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을 비롯하여 노동부, 여성부, 노동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외국의 비공식취업 통계개발 동향에 관심을 가지면서 2004년부터 비공식취업통계 전문가들의 모임인 텔리그룹회의⁶⁾에 한국측 대표단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2005년에 선행연구 차원에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에 기초연구 차원에서 근로장소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2005 인구센서스'에 근로장소 항목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에 근로장소와 조직형태 항목을 추가하여 비공식취업통계 산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근로장소와 조직형태에 관한 질문항목을 어떻게 조사표에 설계하였는지 살펴본 후, 실제로 2005년과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와 2005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얻어진 조사결과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장소 항목을 살펴보면, UN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근로장소의 분류를 실제 조사 시 고정하지 말고 다소 변동을 둘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인구센서스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에 일하는 장소를 세분하여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6) - ILO : 근로 장소의 측정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회의 개최 및 권고안 마련
- 성, 활동종류 및 부지 존재유무별 고용인구 회의: 멕시코, 1998.
- 성, 근로장소 및 종업원수별 고용인구 회의: 멕시코, 1998.
- 공식/비공식분야, 근로장소, 성 및 교육정도별 고용인구 회의: 콜롬비아
- 근로장소에 대한 4차 텔리그룹회의 권고안: 인디아, 2000.
- 근로장소 측정에 대한 전문가 그룹회의 권고안: 제네바, 2000.

(근로장소)

질문) 주로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사업장(건물 및 땅) (2) 자기 집 (3) 남의 집
(4) 거리 (5) 야외 작업현장 6) 운송수단 내부 7) 기타

※ (2) 자기집은 사업장이 가정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거리는 배달, 방문판매 및 서비스, 점포 없는 노점상을 포함합니다.

근로장소는 주업을 기준으로 응답하며, 일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는 주된 활동기준이며,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의미한다. 근로장소는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위치가 아니며,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배달, 방문판매 및 서비스, 영업, 홍보, 조사 등을 하는 경우는 『거리』에 해당한다.

- ① 사업장(건물 및 땅): 공공건물(역, 공항, 부두 등), 사무실, 공장, 학교, 병원, 상점, 종교기관 등 고정된 건물(지하 포함)에서 일하는 경우
- ② 자기 집 : 음식점, 미용실, 구멍가게 등 살림집과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 ※ 사업장과 살림집이 층이 다르거나 별도로 분리된 장소인 경우는 『① 사업장(건물 및 땅)』으로 조사
- ③ 남의 집 : 가정부, 가사도우미, 간병인, 가정교사 등 남의 집에서 살거나 방문하여 일하는 경우
- ※ 일하는 남의 집이 '사업장과 살림집'이 함께 되어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① 사업장(건물 및 땅)』으로 조사
- ④ 거리 : 각종 방문, 이동판매, 점포 없는 노점상, 행상, 청소 등 고정되지 않은 장소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거나 거리에서 일하는 경우
- ⑤ 야외 작업현장 : 논, 밭, 들, 강, 바다, 건설/토목공사 현장 등
- ⑥ 운송수단 :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내부에서 운행관련 서비스 활동
- ※ 지하철 등의 외판원, 차량⁷³이용한 행상 등은 『④ 거리』로 조사

(조직형태)

질문) 지난주 소속된(일한)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 사업체(판매점, 대리점, 개인병원 등 포함)
- ②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체(개인지도, 노점, 이동판매 등)
- ③ 법인(회사 등, 사립학교, 종합병원 형태, 은행, 종교단체 등)
- ④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 학교, 국·공립병원 포함)
- ⑤ 비법인단체(후원회, 종진회, 동창회 등)

조직형태는 법인등록이 안 된 경우(개인 사업체, 비법인 단체)는 소유 경영형태에 따라 개인의 소유경영은 개인사업체, 그 외 기타는 비법인 단체로 구분한다. 또한 사업체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체 개인의 소유경영은 개인사업체, 이 외 기타는 비법인 단체로 한다. 법인 등록이 된 경우(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상법상 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과 상법이외 다른 법률, 즉 회사이외법인(재단, 사단, 학교, 의료, 종교, 특수법인)으로 구분한다.

- ①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 사업체(판매점, 대리점, 개인병원 등 포함) : 개인이 소유,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운영하는 경우

※ 사업체 명칭만을 고려하여 회사법인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사업체 중 대리점 형태로 회사에서 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리점, 가맹점 등은 회사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체』에 해당(예: 삼성전자()직영대리점은 회사법인)

- ②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체(개인지도, 노점, 이동판매 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 소유, 경영하는 사업체
- ③ 법인(회사 등, 사립학교, 종합병원 형태, 은행, 종교단체 등)

<회사법인>

- ※ 상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우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또는 지점도 포함됨(예: 시티은행 ()지점)

<회사이외법인>

-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민간의료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예: ()소아과 등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병원의 경우는 개인사업체에 해당), 정부투자기관(수자원공사, 지방공사 강남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농, 립, 수, 축산업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신용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④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입법기관(국회, 지방의회), 사법기관(헌법재판소, 각종 법원 및 그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소재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그 소속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설립된 학교 또는 병원

⑤ 비법인단체 :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비법인 교회 또는 암자 등

인구센서스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의 결과를 보면 사업장, 가정, 거리 등 근로장소별 구성비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4> 참조). 인구센서스의 근로장소별 구성비에서 사업장의 비율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야외작업현장이 약 14%, 이밖에 거리(3.7%), 자기집(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시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장과, 거리, 가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거리, 가정근로자 취업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한 가정근로자층의 증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약한 근로자층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근로 장소 (인구센서스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⁷⁾)

	2005 인구센서스		2005.4월(경활조사)		2006.8월(경활조사)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계	19,277	100.0	22,934	100.0	23,164	100.0
1. 사업장	14,370	74.5	17,105	74.6	17,455	75.4
2. 자기 집	628	3.3	484	2.1	700	3.0
3. 남의 집	367	1.9	389	1.7	381	1.6
4. 거리	709	3.7	722	3.1	995	4.3
5. 야외작업현장	2,663	13.8	3,127	13.6	2,620	11.3
6. 운송수단	469	2.4	1,058	4.6	1,008	4.4
7. 기타	69	0.4	49	0.2	6	0.0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2006년)와 유럽연합(EU) 12개 국가의 가정근로자(1996년)를 비교하면(<표 5> 참조), 2006년 한국의 가정근로자(자기 집 및 남의 집)는 4.6%, EU 12개국 평균은 4.6%(1996년)를 나타냈다. 비록 비교시점이 상이하여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한국의 가정근로자는 1996년 EU의 가정근로자 구성비와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의 가정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보통신의 발전, 인터넷 보급률의 확대, 재택근무의 증가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근로자의 대부분이 비공식취업자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상태, 소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정책수립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7)

<표 5> 유럽연합(EU)국가의 가정근로자(homeworker) (총고용 대비 %)

국 가	1992	1993	1994	1995	1996
EU 12개국	4.9	4.2	4.6	4.6	4.6
벨기에	11.6	11.3	11.1	10.8	10.1
덴마크	11.0	10.3	11.8	11	11
프랑스	0.8	2.6	5.5	5.4	5.0
독일	5.2	5.1	5.1	4.1	5.0
그리스	1.7	2.3	1.8	1.6	1.4
아일랜드	20.6	19.5	18.6	18.2	7.1
이탈리아	5.5	5.1	4.5	4.6	4.6
룩셈부르크	5.5	6.9	6.3	6.9	6.1
네델란드	5.6	6.4	6.8	6.8	6.8
포르투갈	4.4	3.9	4.0	3.7	3.5
스페인	0.8	0.7	0.6	0.6	0.6
영국	7.6	2.7	2.7	2.6	2.6

자료 : Felstead & Jewson(2000), In Work at Home : 1992-1997, Eurostat

또한 근로장소를 남녀 성별로 구성비를 보면, 자기 집 및 남의 집 등에서 노동하는 여성가정 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약 3배 높았으며, 반대로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등의 남성비율은 여성에 비해 약 3배 높았다(<표 6> 참조).

	<표 6> 성별 근로 장소(구성비)		
	계(천명)	2006.8월(경찰조사 시험조사)	
		남자(%)	여자(%)
계	23,164	58.3	41.6
1. 사업장	17,455	42.7	32.6
2. 자기 집	700	0.8	2.3
3. 남의 집	381	0.3	1.3
4. 거리	995	2.4	1.9
5. 야외작업현장	2,620	7.9	3.4
6. 운송수단	1,008	4.2	0.1
7. 기타	177	0.0	0.0
	6		

종사상지위별로 근로장소의 구성비 특징을 살펴보면, 거리에서 주로 상행위를 하는 거리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은 임시근로자 및 자영자로 이루어졌다. 한편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자영자 및 무급가족근로자로 구성되었다.

<표 7> 종사상지위별 근로 장소(구성비)

	2006.8월(경찰조사 시험조사)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계	35.5	21.8	9.1	7.1	19.8	6.7
1. 사업장	32.9	17.7	4.9	6.3	9.5	4.1
2. 자기 집	0.0	0.1	0.4	0.1	2.0	0.3
3. 남의 집	0.1	0.7	0.4	0.0	0.5	0.0
4. 거리	0.6	1.6	0.4	0.1	1.3	0.2
5. 야외작업현장	0.7	0.8	2.8	0.5	4.5	2.1
6. 운송수단	1.2	0.8	0.2	0.1	2.0	0.0
7. 기타	0.0	0.0	0.0	0.0	0.0	0.0

비공식취업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장소 항목과 조직 형태 항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조사의 기본항목과 위의 근로장소와 조직형태 등 두 가지 항목만으로도 비공식부문 취업자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15회 ICLS 회의 및 OECD의 비관측경제 매뉴얼, 이탈리아 통계청의 비관측 분류 등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표 8>을 살펴보면, 근로장소별로 사업자미등록개인사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약 367만명으로 총고용인원의 약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야외작업현장이 7.1%, 사업장 4.4%, 가정 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근로 장소별 조직형태

(단위: 천명, %)

	2006.8월(경활조사-시험조사)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체	사업자미등록 개인사업체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비법인단체
계	10,442(45.1)	3,673(15.9)	7,216(31.1)	1,650(7.1)	184(0.8)
1. 사업장	8,565(37.0)	1,016(4.4)	6,203(26.8)	1,500(6.5)	172(0.7)
2. 자기 집	275(1.2)	387(1.7)	31(0.1)	4(0.0)	3(0.0)
3. 남의 집	68(0.3)	241(1.0)	61(0.3)	8(0.0)	3(0.0)
4. 거리	345(1.5)	289(1.2)	276(1.2)	82(0.4)	4(0.0)
5. 야외작업현장	597(2.6)	1,644(7.1)	341(1.5)	37(0.2)	2(0.0)
6. 운송수단	591(2.6)	94(0.4)	302(1.3)	19(0.1)	1(0.0)
7. 기타	1(0.0)	2(0.0)	1(0.0)	1(0.0)	-

한편 종사상지위별 조직형태를 보면, 사업체미등록 개인사업체 자영업자는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일용직 1.7%, 임시직 0.9%, 고용주 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종사상지위별 조직형태

(단위: 천명, %)

	2006.8월(경활조사)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체	사업자미등록 개인사업체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비법인단체
계	10,442(45.1)	3,673(15.9)	7,216(31.1)	1,650(7.1)	184(0.8)
1. 상용	1,466(6.3)	37(0.2)	5,298(22.9)	1,362(5.9)	80(0.3)
2. 임시	3,038(13.1)	202(0.9)	1,483(6.4)	224(1.0)	-
3. 일용	1,256(5.4)	387(1.7)	376(1.6)	64(0.3)	6(0.0)
4. 고용주	1,475(6.4)	129(0.6)	50(0.2)	-	4(0.0)
5. 자영자	2,329(10.1)	2,232(9.6)	6(0.0)	-	13(0.1)
6. 무급가족	878(3.8)	179 685(3.0)	2(0.0)	-	8(0.0)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취업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본 후, 비공식취업 측정에 필요한 핵심항목인 근로장소와 조직형태 항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시험조사 및 인구센서스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비공식부문 취업자를 산출하였다.

비록 노동력조사가 비공식취업의 불규칙과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공식부문 취업자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사로 노동력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에서 비공식취업의 측정을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근로장소 조사 결과를 보면, 컨테이너 하역장,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현장과 노점상, 이동판매 등 거리, 그리고 가정(자기 집 및 남의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총고용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장소 항목만으로 비공식취업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 노동시장의 유연화, 재택근무비중의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사업체의 등록여부에 따른 조직형태를 근로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야외작업현장 근로자들이 속한 개인사업체미등록 비중이 총사업체미등록 비중의 44.8%, 자영자는 사업자미등록 개인사업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비공식부문 취업자는 약 367만명으로 총고용의 1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제17회 ICLS의 비공식취업 산출을 위해 권고한 항목, 즉 근로자의 서면계약 및 연금수혜여부, 연가사용 등에 대한 항목이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최정수, 박현정(2005), 비공식고용통계개발(I), 통계연구모음집, 통계청.
- [2] Charmes. J. (2004), Data Collection on the Informal Sector: a Review of Concepts and Methods Used Since the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Definition - Towards a Better Comparability of Available Statistics, 7th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 (Delhi Group), New Delhi.
- [3] Chen, M. (2004), Rethinking the Informal Economy: Linkages with the Formal Economy and the Formal Regulatory Environment, EGDI-WIDER Conference, Helsinki, Finland.
- [4] Felstead A. and Jewson N.(2000), In Work at Home, Towards an Understanding of Homeworking, P. 203.
- [5] Hussmanns, Ralf(2001), Informal sector and informal employment: elements of a conceptual framework; 5th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 (Delhi Group), New Delhi.
- [6] Hussmanns, Ralf(2003), Defining and measuring informal employment, ILO.
- [7] Hussmanns, Ralf(2004), Statistical definition on informal employment: Guidelines endorsed by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ans(2003), 7th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 (Delhi Group), New Delhi.
- [8] ILO(2002), On measuring place of work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download/wpneas.pdf>)
- [9] ILO(2002), Decent Work and the Informal Economy.
- [10] Mata Greenwood A. (2000), Measurement of the variable "place of work", paper prepared for the Expert Group Meeting on the Measurement of Place of Work, Geneva.

- [11] Rahnan A. and Mohanmad F. (2004), Mesurment of Informal Economy in Malaysia, 7th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 (Delhi Group), New Delhi.
- [12] OECD/IMF/ILO(2002), Measuring the Non-observed economy- A Handbook.
- [13]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14] Sastry. N. S. (2004), Estimation of Informal Employment in India 1999~2000 through application of ILO conceptual framework on NSS data, 7th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 (Delhi Group), New Delhi.
- [15] UNECE(2003), Non-observed Economy in National Accounts : Survey of National Practices.
- [16] UNSD(2002), Collection of Economic Characteristics in Population Censuses, Technical Report, 103~109pp.

<부록> 비공식부문 취업 조사항목

전 응답자에 대한 질문

질문 1) 당신이 고용된 사업체의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1) 10명 미만 (2) 10~19명 (3) 20~49명 (4) 50~99명 (5) 100명 이상

- * (2)~(5) 번을 대답할 경우 질문 4)로 가시오.
- * 규모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질문 2) 정확한 근로자수를 적어주세요 (명)

질문 3) 고용형태별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 (1) 소유주 총(명) 남자(명), 여자(명)
- (2) 가족근로자 총(명) 남자(명), 여자(명)
- (3) 유급 근로자 총(명) 남자(명), 여자(명)
- (4) 무급 근로자 총(명) 남자(명), 여자(명)

- * 델리그룹(Delhi Group)에서는 유급근로자수가 5인 미만을 비공식
부문으로 간주

고용주, 가족근로자에 대한 질문

질문 4) 이미 사업체로 등록되었는가?
(1) 예 (2) 현재 진행 중 (3) 아니오 (4) 모름 (5) 대답 거부
* (2)~(5) 번을 대답할 경우 질문 10)으로 가시오.

질문 5) 사업체는 어떤 형태로 등록되었는가?
(응답 범주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질문 6) 사업체에서 지불하는 조세의 유형은?
(응답 범주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근로자에 대한 질문

질문 7) 당신은 정부, 공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NGO, 협회 등에 고용되었는가?

- (1) 예 질문 10)으로 가시오.
- (2) 아니오 계속

질문 8) 당신을 고용한 사업체는 어떤 법적/제도적 형태인가?

- (1) Cooperation (2) Limited liability company (3) Registered cooperative
- (4) Ordinary partnership (5) Individual ownership
- (6) Private household employing domestic staff (7) Other
- (8) Do not know

* (1) ~ (7) 응답은 질문 10)으로 가시오. (8) 응답은 계속

질문 9) 당신이 고용된 사업체의 유형은?

- (1) 공장 (2) 은행 혹은 보험회사 (3) 도매상점/레스토랑/서비스체인점
- (4) 건설회사 (5) 민간병원 혹은 학교 (6) 엔지니어링 기업/건축설계
- 사무소/법률사무소/개인의원 등 (7) 농장, 소매상점 등 (8) 기타

전 응답자에 대한 질문

질문 10) 주로 어느 곳에서 일하는가?

- (1) 가정 (2) 가정 내 혹은 붙어 있는 근로 장소
- (3) 공장, 사무실, 상점, 숭, 간이상점, 가정과 독립된 장소 등
- (4) 농장 (5) 점원의 가정 (6) 고용주 가정 (7) 건설 현장
- (8) Market (9) 노점

근로자에 대한 질문

질문 11) 당신은 정규직 혹은 임시직으로 고용되었습니까?

- (1) 정규직 (2) 임시직

질문 12) 당신은 서면계약서상에서 고용되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13) 당신의 고용주는 연금(pension fund)을 지불하기로 하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모릅니다

질문 14) 당신은 연가 사용 혜택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모릅니다

질문 15)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을 더 이상 하기 힘들 때, 당신은 병가 휴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모릅니다

질문 16) 자녀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출산휴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모릅니다